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33809 판결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박범석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889,056원 및 그 중 90,548,300원에 대하여 2020. 7. 8.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한 증여계약은 90,889,05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90,889,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과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9. 12. 31.자 신용보증약정은 2018. 8. 16.자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 보증상대처만 변경하는 것으로 사실상 2018. 8. 16.자 신용보증약정의 갱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약정일자	신용보증기간	보증상대처	신용보증종류	보증원금 (원)
1	2018. 8. 16.	2018. 8. 16. ~2019. 8. 14.	D은행 유성지점	대출보증	90,000,000원
2	2019. 12. 31.	2019. 12. 31. ~2020. 12. 30.	E은행	대출보증	9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손해금, 소정의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2019. 12. 3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상대처인 E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20. 4. 1.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E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20. 7. 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원리금 91,022,950원(= 원금 90,000,000원 + 이자 1,022,9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474,650원 회수하였다.

3)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액(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합계 90,889,056원(= 대위변제잔액 90,548,300원 + 확정손해금 104원 + 대지급금 340,652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피고들의 관계 및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들은 2003. 8. 4. 혼인하였다가 2004. 9. 18. 협의이혼하였고, 2004. 12. 31. 혼인하였다가 2006. 12. 20. 협의이혼하였으며, 2010. 12. 30. 혼인하였다가 2020. 3. 10. 협의이혼하였다.

한편, 피고들 사이에는 두 명의 미성년 딸(2003년생, 2012년생)이 있다.

2) 피고들은 2013. 6. 28.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 12. 2.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합계 90,889,056원(= 대위변제잔액 90,548,300원 + 확정손해금 104원 + 대지급금 340,652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90,548,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의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 12. 2.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앞선 2018. 8. 16.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인 2020. 4. 1.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2020. 7. 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원리금 91,022,95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A은 2019. 12. 2. 대전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당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이후 피고 B이 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등과 피고 A이 피고 B에게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 사이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나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 공동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35,000,000원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채무는 144,489,826원(이는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된다)이었으므로, 피고 B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실질 가치는 45,255,087원[= (235,000,000원 - 144,489,826원) × 1/2]
정도에 불과하다.

② 피고 B은 약 18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③ 피고 B은 피고 A이 자신이 운영하던 C 사업체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등을 가지고 향후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고들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 받았다.

마. 소 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성